
2026년 충청남도 도정 브랜드 홍보 용역 과 업 지 시 서



대 변 인
(디지털소통담당관)

1 과업 목적

- 민선9기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도정철학과 미래 비전을 도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

2 과업 방향

- ^{방향(1)} 「통하는 충남, 도민과 함께」를 영상의 컨셉트로 설정하고, 도민·현장·미래와 통하는 충남도정의 비전·철학을 표현
- ^{방향(2)} 「AI 수도, 충남」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충남도정의 목표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표현
- 카피, 스토리, 영상미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동일한 핵심 메시지와 브랜드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제작

※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7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광고로 보이지 않도록, 도정 비전과 충청남도 브랜드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.

3 과업 내용

- 사업명 : 2026년 충청남도 도정 브랜드 홍보 용역
- 발주기관 : 충청남도
- 사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26. 11. 30. 까지
※사업기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- 소요예산 : 40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- 과업내용
 - 과업범위 : 도정 브랜드 홍보 영상 기획 및 제작, 제작 영상 대국민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진행 등에 관한 일체 사항
 - 제작종류

구 분	제작내용	분 량	납품기한
2026년 충청남도 도정 브랜드 홍보 용역	TV 광고 영상	3편 (제작안별 1~2편 제작)	'26. 11. 30.(월)

※ 세부 제작 분량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

1 과업 내용

- 도정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영상 기획 및 제작(총 3편)
- 도정 브랜드 홍보 영상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실행

2 과업 세부 범위

가. TV 광고 영상 제작(총 3편)

- 민선9기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도정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
 - 기존 형식적인 기관 영상 제작 방식을 벗어나,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상 구성, 실사 촬영 진행(부분적인 AI활용은 가능)

제작안	영상내용(예시)
통하는 충남, 도민과 함께	▶ 단절을 넘어 사람과 사람,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‘통하는 충남’의 가치를 표현 ▶ 연결을 통해 더 넓은 기회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남
AI 수도, 충남	▶ AI가 물, 전기와 같이 SOC로써 일상·산업 전반에 스며든 미래 충남 ▶ 모든 도민이 AI 혜택을 누리며,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적 가치 전달

※ 두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총 3편을 제작하며, 주제별로 각각 3편을 제작하는 것은 아님

- 광고 영상 구성 및 핵심 메시지 전달력 제고를 위해 광고 전문 카피라이터, 시나리오 작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섭외·활용
- 송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 편집
 - (유튜브/SNS) 인스트림(가로형), 쇼츠(세로형)에 적합한 형식으로 영상 편집, 시인성 높은 영상 스틸컷(썸네일, 이미지 등) 제작
 - (옥외매체) 옥외전광판 및 KTX 등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환경을 고려하여 자막 삽입 등을 통한 영상 편집·구성

나. 도정 브랜드 홍보 영상 및 핵심 메시지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실행

- 도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모션 기획·운영
 - 도정 브랜드 메시지를 쉽고 친숙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챌린지, 이벤트 등 파급력 있는 디지털 참여 프로그램 제작·운영
- 프로모션 운영 결과 및 성과 분석
 - 주요 성과지표(KPI) 분석 및 향후 전략 수립 활용방안 제시

1 일반지침

가. 일반사항

-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모든 과업은 이의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(충청남도, 이하 생략)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
- 본 과업수행에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발주처의 보완 요구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출된 공문, 서류, 제안서, 제작물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.
- 발주처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진행 중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수행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요청한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, 양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-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·정보·자료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·대여·유포 누설할 수 없으며, 본 과업 외 일절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기간조정

-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과업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다. 인력구성

- 발주처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,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한다.
- 제안서에 과업담당자로 제출된 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, 수행기관의 사정상 과업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동등 이상의 경험이 있고 동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 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

라. 보안사항

-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,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-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.
-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수행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 기관이 부담한다.

마. 지적재산권 등

-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,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한다. 단,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 기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, 발주처는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(보안 등)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.
-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한다.
-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개발한 보고서, 디자인 등 창작물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.
-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불법 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바. 과업수행 중단 및 계약의 해지

- 발주처는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, 과업수행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에 용역 수행의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.
-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해태·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사. 기타사항

-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, 최종적으로는 발주처가 결정권을 갖는다.

2 과업의 변경

-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 -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,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, 발주처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가 요청한 기일 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,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작업이 발생한 경우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3 행정사항

가. 착수계 제출

- 용역 계약 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시에 과업수행자 명단, 이력서, 보안각서,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공정보고

- 수행기관은 용역과업 수행 중 수집자료의 정리 등을 위한 보고회는 3회를 기본으로 하고(착수, 중간, 최종)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행기관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
 - 착수보고회 :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수행계획 보고
 - 중간보고회 : 단계별 세부과업 완료 시
 - ※ 중간보고회는 2회 이상 개최 가능하며 과업진행에 대한 보고는 발표보고(PT 등)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고, 보고회 개최 2일전까지 출력물 및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최종보고회 : 용역 종료 전 10일 이내 용역결과 종합 보고

- 수시보고 및 자문위원 선정(관련 분야 전문가)을 통한 자문회의 운영 등
 - 월보(매월 5일 이내), 수시보고(주요 결정 및 의논사항 등)
 - 자문회의 2회 이상(제작 전 콘티작성 단계, 제작 후 시사 단계 등)
- ※ 자문위원 구성은 전문가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전협의 후 구성
- 보고회의 및 자문회의 전에 관계 실무자와 사전협의 하여 의견을 종합하고, 실무협의, 자문회의 등 각각의 의견사항을 종합·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.

4 기타 유의 사항

- 본 과업과 관련한 창작물의 판권과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최종 과업 종료 후 제작원본(Data File) 및 저작권이 확보된 모든 원본 소스(사진, 폰트, 영상, 음악 등)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납품장소 : 충청남도 디지털소통담당관 디지털소통정책팀
 - 납품형태

구분		수량	비고
홍보영상	외장하드	1개	▶ 완성본(사용된 CG 원본 포함) : mxf, mov, mp4 ▶ 클린본(사용된 CG 원본 포함) : mov, mp4 ▶ 촬영원본(사용된 CG 원본 포함) : mov, mp4

- 광고·홍보물 제작 시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한다. 단, 충청남도의 사전승인을 받아 영상물 또는 컴퓨터 그래픽분야 등의 전문가 등은 변경·충원할 수 있다.
- 본 과업과 관련, 충청남도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작품·자료를 타인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.
-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법·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, 과업수행자가 이를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.
-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.
-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.